

第 15 回 臨時會

2005. 5. 9(月)

檢 討 報 告

- 계룡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계룡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계룡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鷄 龍 市 議 會

專門委員 金 泳 鎮

檢 討 報 告

□ 改定背景

-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자동차세·주행세 및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도시계획세 등 변경 내용을 관계 법령에 맞게 보완·정비하고자 함.

□ 主要内容

-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삭제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변경되고(안 제26조),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되고(안 제27조), 재산세 납기를 조정(안 제29조의3), 구판사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안 제32조)과 재산세 신고의무 대상을 조정(안 제34조)하고,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이 변경(안 제92조)되고, 도시계획세율을 조정(안 제96조)한다.
- 재산세의 세율 적용하여 토지 및 주택의 세율적용방법을 규정(안 제29조2).
- 자동차세 중 시시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조정됨에 따른 조문개정(안 제39조제1항)
- 주행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안 제44조제1항).
-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게 함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추가(안 제58조제5항)하고, 시행령으로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그 조정세율을 담배소비세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 적용조항 신설(안 제60조제3항).
-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관련 조문 변경(안 28조, 안 제31조제1항).

□ 檢討意見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고라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이에 부합 되도록 정비하고,
- 관계법령에 맞게 보완 하려는 것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

檢 討 報 告

□ 改定背景

-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내용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을 관계법령에 맞게 보완정비하고자 함.

□ 主要内容

-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정비하고, 주거용 건축물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건축물 및 주택으로 조문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농어촌주택개량 등 과세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조정(안 제9조)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정비(안 제14조)하고,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조문(안 제16조)과,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조문(안 제20조)과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조문(안 제26조)을 정비하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임대용 공동주택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 규정 신설하는 등 임대주택 대한 감면 대상 확대(안 제10조).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3」 ⇒ 「1,000분의 1.5」로 조정(안 제11조).

□ 檢討意見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고라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이에 부합 되도록 정비하고
-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해당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관계법령 및 감면 취지에 맞게 보완 하려는 것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

檢 討 報 告

□ 改定背景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로 발생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 수수료를 조례에 규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수수료 감면 근거 법령중 하나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전문개정 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主要内容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 수수료의 항목과 요율을 신설하여 별표 1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에 규정함(안 별표 1).
- 수수료 감면 근거 법령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된 조문에 맞게 조례의 관계 조문을 개정함(안 제7조제4호).

□ 檢討意見

- 본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수수료 감면의 근거

법령중 하나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전문개정
에 따른 해당 조문이 이에 부합 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각각 500원으로 그
수수료를 정하고, 현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
조제1항 제4호 중 “제18조제2항”을 “제17조제3항”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참고로 충청남도 내 16개 자치단체중
2개 자치단체가 300원으로 하고 있고, 계룡시 포함 14개 자치단
체가 500원으로 하고 있다)

○ 관계법령의 변경취지에 맞게 보완 하려는 것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